

【 6 】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5. 5. 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 공무원의 직명을 기금출
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에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에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
납원으로 개정 (안 제4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기금출납명령관” 과 “기금출납공무원” 을 “기금운영관” 과 “기금출납원” 으로
각각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안
<p>제4조(기금관리공무원임명) 군수는 영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기금관리공무원임명) ----- -----기금운용관 -- 기금출납원 ----- 기금 운용관 ----- 기금출납원 ----- .</p>				